

수원지방법원 2016. 3. 24 선고 2015가단3446(본소), 2016가단501558(반소) 판결 [손해배상
청구 · 구상금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17. 4. 28 선고 2016나56288(본소), 2016나56295(반소)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6. 3. 24 선고 2015가단3446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A

피고(반소원고)경기도 교육청

변론 종결 2016. 2. 25.

판결 선고 2016. 3. 24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45,987,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2. 26.부터 2016. 3. 24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45,987,285원 및 이에 대한 2016. 1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4. 본소로 인한 비용 중 45%는 원고(반소피고)가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하고, 반소로

인한 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5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81,396,85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주문 제2항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가 김포시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원고를 채무자로, 피고를 제3채무자로, 원고의 급여 채권을 압류 및 추심채권으로 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이하 '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'이라 한다)이 있었다.

1	C	2004타채6503호	27,000,000원	2004. 10. 12.
2	D	2004타채7684호	10,000,000원	2004. 11. 23.
3	E	2004타채7999호	120,000,000원	2004. 12. 1.
4	F	2004타채8025호	6,500,000원	2004. 12. 3.
5	G	2005타채746호	37,500,000원	2005. 2. 3.

나. 원고는 2005. 2. 28. 명예퇴직을 하였고, 피고는 2005. 4. 7. 원고의 급여 및 명예퇴직수당 합계

56,788,850원을 공탁(서울남부지방법원 2005년 금제1754호)하였다. 2005. 9. 15.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(서울남부지방법원 H)에서 공탁금이 표1 기재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었다.

다. 피고는 2008. 8. 1. 피고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I교육원(변경 전 명칭: J교육원)에서 2013. 7. 31.까지 근무하였다.

라. 한편 B초등학교 행정담당 직원은 2009. 5. 28.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서류를 I교육원에 이관하였다.

마. 채무자를 원고로,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자 주식회사 더그래피티의 청구금액 20,000,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타채1866호)이 2011. 8. 9.에,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25,179,31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타채867호)이 2013. 4. 24.에 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.

바. 피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급여 등을 공탁하였다.

1	2010년 금제302호	2010. 1. 20.	13,680,048원
2	2010년 금제2696호	2010. 6. 10.	9,333,400원
3	2010년 금제6140호	2010. 11. 25.	11,575,883원
4	2011년 금제2433호	2011. 6. 13.	11,397,954원
5	2011년 금제5221호	2011. 12. 16.	11,499,444원
6	2012년 금제116호	2012. 6. 28.	13,233,500원
7	2012년 금제5263호	2012. 12. 26.	12,392,340원
8	2013년 금제4111호	2013. 8. 29.	15,492,720원
합계	98,605,289원		

사. 위 공탁금은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었고, 원고는 위와 같은 공탁 및 배당에 대하여 전혀 이의하지 않았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~6호증, 을 3~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B초등학교장이 보관하여야 할 표1 기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서류들을 I교육원에 이관한 것은 공무상 직권남용 또는 직무 수행상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이고 이 때문에 피고가 표2 기재와 같이 공탁하여 그 금액 상당의 급여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,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가 김포시 B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의 급여채권에 효력이 미칠 뿐이고, 원고가 퇴직 후 재취업한 이후에 받게 될 급여채권에는 미치지 못한다. 피고가 표2 기재와 같이 공탁한 것은 무효이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탁금액 상당의 급여를 미지급하였으므로, 그 일부로서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1) 전제되는 법리 및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다62640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원고가 명예퇴직하기 이전의 급여채권에 미칠 뿐 재취업한 이후의 급여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. 표2 순번 1~4 기재 공탁은 효력없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이고, 순번 5~8 기재 공탁은 기초 사실 마.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.

2)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을 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B초등학교의 공무원은 피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된 서류를 I교육원으로 이관한 사실, 이는 피고의 채권압류 처리 규정에 따른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, 서류를 이관할 당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들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은 점,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육청 공무원들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원고가 재취업한 이후 받게 될 급여채권에 미치지 않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, 위 서류들을 이관한 것이 공무상 직권남용 또는 직무수행상의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)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표2 순번 1~4 기재 공탁은 효력 없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, 결국 원고는 위 공탁금 합계 45,987,285원 상당의 급여를

지급받지 못하였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5,987,2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. 2. 26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. 3. 24.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반소에 관한 판단

앞서 본 바와 같이 표2 순번 1~4 기재 공탁이 효력 없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, 위 공탁에 따른 배당에 의해 원고의 채무가 변제되었다. 그와 같은 변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변제금액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.

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표2 순번 1~4 기재 공탁금 상당액인 45,987,28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. 1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,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,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심병직

- 1) 모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발령되었음.
- 2) 모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.